

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[별표 1] <개정 2026. 1. 23.>

특수 수당 지급기준표

구 분	지 급 대 상	지 급 액								
1. 민원 업무 수 당	각 급 선거 관 리 위 원 회 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	월 30,000 원								
2. 선거 관리 수 당	각 급 선거 관 리 위 원 회 에서 선거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6급(상당) 이하 공무원(조사활동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)	월 70,000 원								
3. 기술 정보 수 당	1) 일반직공무원 중 과학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	5급 이상 : 월 50,000원 이하 6급·7급 : 월 30,000원 이하 8급 이하 : 월 20,000원 이하 <가산금> 기술정보수당 지급 대상자 중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·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,000원 이하, 기능장·기사는 월 30,000원 이하, 산업기사는 월 20,000원 이하를 더하여 지급한다.								
	2) 전산업무(자료입력업무를 제외한다)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	3년 이상 근무자 : 월 50,000원 이하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: 월 30,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 : 월 20,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.								
4. 연구 업무 수 당	연구직공무원	월 80,000원								
5. 개방형 직위 등 보전 수 당	「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공모 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	<table><tr><th>계급·직무등급</th><th>월 지급액</th></tr><tr><td>2급 이상</td><td>300,000원</td></tr></table>	계급·직무등급	월 지급액	2급 이상	300,000원				
계급·직무등급	월 지급액									
2급 이상	300,000원									
6 . 사 서 수 당	사서직공무원	5급 이상 : 월 30,000원 이하 6급 이하 : 월 20,000원 이하								
7 . 중 요 직 무 급	직무의 중요도, 난이도,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(정원의 27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)	가) 지급상한액								
		<table><tr><th>지급대상</th><th>월 상한액</th></tr><tr><td>3급(상당) 또는 4급(상당) 공무원(과장급)</td><td>200,000원</td></tr><tr><td>4급(상당) 또는 5급(상당) 공무원</td><td>150,000원</td></tr><tr><td>6급(상당) 이하 공무원</td><td>100,000원</td></tr></table>	지급대상	월 상한액	3급(상당) 또는 4급(상당) 공무원(과장급)	200,000원	4급(상당) 또는 5급(상당) 공무원	150,000원	6급(상당) 이하 공무원	100,000원
		지급대상	월 상한액							
		3급(상당) 또는 4급(상당) 공무원(과장급)	200,000원							
		4급(상당) 또는 5급(상당) 공무원	150,000원							
6급(상당) 이하 공무원	100,000원									
나) 지급방법										
구체적인 지급대상, 지급액, 지급기준,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정한다.										